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

추천에대한절차및결정방법

1. 후보자 소견 청취

- ①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전 후보자의 등록순서에 따라 본회의에서 5분이내로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다.
- ② 5분 경과시에는 의장이 소견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2. 후보자 추천 결정

- ① 경력·비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추천한다.
- ② 단기명 투표방식으로 기명하여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1인의 후보자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한다.

3. 후보자 추천 방법

- ① 추천자 결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장·부위원장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2차로 나누어 추천자를 결정하되
- ② 결선투표에서 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추천자로 한다.
 - 2. 경력자가 2인일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한다.